

사 업 방 법 서

(사업방법서 별지)

무배당하나거치연금보험

1. 보험종목 및 명칭

구 분	연금지급형태	피보험자 범위
(무)하나거치연금보험 (거치형)	종신연금형 [정액,체증(5·10%)]	개인연금형, 부부연금형
	확정연금형 [7·10·15·20 년형]	개인연금형
	상속연금형	개인연금형

2. 보험료 납입기간, 연금개시연령, 보험기간

보험료 납입기간	연금개시연령	보험기간
일시납	- 개인연금형 : 45 ~ 70 세형 - 부부연금형 : 48 ~ 70 세형	◎ 종신 - 제 1 보험기간 책임개시일로부터 생존연금지급개시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- 제 2 보험기간 제 1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(단,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 까지)

단,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가입 후 3년 이후에 한함.

또한,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선택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연령은 해당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최고 가입연령을 초과할 수 없음.

3. 가입연령

만 15세 ~ (연금개시연령-3)세

4. 보험료 납입주기

일시납

5. 납입보험료 한도

기본보험료 : 100만원 - 50억원

추가납입보험료 : 기본보험료의 200% 이내로 함

6. 배당에 관한 사항

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.

7.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

일시납보험료의 100%로 함.

8. 연금계약 순보험료의 부리이율에 관한 사항

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부리이율은 「공시이율」로 한다.

②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. 회사는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,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,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한다

③ 공시기준이율의 산출

-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 지출율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.

공시기준이율 산출식 = (내부지표 + 외부지표) / 2

- 내부지표 산출식 =
$$\frac{2 \times (I - E)}{A_6 + A_0 - (I - E)} \times \frac{12}{6} \times 100$$

- I: 직전 6개월간 투자 영업수익

- E: 직전 6개월간 투자 영업비용

- A: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 자산의 월말 잔액.

A₆: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

A₀: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

- 외부지표 산출식 = (B1 + B2 + B3) / 3

- B1: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- B2: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- B3: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- 가중이동평균이율 (B_i) =
$$\frac{B_i(-3) \times 1 + B_i(-2) \times 2 + B_i(-1) \times 3}{6}$$

$B_i(-3)$: 산출시점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

$B_i(-2)$: 산출시점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

$B_i(-1)$: 산출시점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

-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.
 -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무보증 회사채 (AA-)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.
 -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(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.) 중 전년도 원화예수금(말잔)기준 상위 5개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. 단, 전년도 원화예수금(말잔)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은행을 정한다.
 -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,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.
 -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, 시장의 실제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.
-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한다. 다만, 조세특례 제한법 제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.

- ④ ②호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(②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)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
-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.
- ⑥ 부리이율은 연복리 3.0%를 최저한도로 한다.
- ⑦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.
- ⑧ 3년미만 경과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
보험료 납입경과기간	중도해지이율
1년 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60%, 3.0%)
2년 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70%, 3.0%)
3년 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80%, 3.0%)

9.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

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.

10. 부가하는 특약

무배당정기특약, 무배당재해사망특약, 무배당재해상해특약Ⅱ, 무배당입원특약Ⅲ, 무배당암보장특약Ⅱ, 무배당중신입원특약, 무배당중신사망보장특약, 무배당치매간병특약

11. 기타

가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전까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,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.5%로 한다. 단,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유지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립액의 인출이 불가능하다. 또한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,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다.

- ①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
 - ②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휴업
 - ③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
 - ④ 계약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
 - ⑤ 계약자가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
 - ⑥ 기타 계약자가 가계생활자금, 학자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립액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
- 단, 이 경우 적립액의 인출은 해약환급금의 25%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 4회에 한함.

나. 동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영한다.

(별첨 제 1 호)

보험증권의 서식

(별첨 제 2 호)

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